

조선총독부관보(朝鮮總督府官報) 제2319호(號) 1934(昭和 9)년 10월 2일 화요일

○ 고 시(告示)

조선총독부고시(朝鮮總督府告示) 제495호(號)

1932(昭和 7)년 조선총독부고시(朝鮮總督府告示) 제419호(號)(하물대금인환규정[荷物代金引換規程]) 중(中) 1934(昭和 9)년 10월 10일부터 아래[左]와 같이 개정(改正)함.

1934(昭和 9)년 10월 2일 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조선총독(朝鮮總督) 우가키 가즈시게(宇垣一成)

제3조(條) 중(中) 「진남(全南) 광주(光州),」의 아래[下]에 「동래(東萊),」를 추가(追加)함.